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호 4711

제출연월일 : 2024. 10. 16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종전에는 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'1개월 이상'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였으나, 앞으로는 '6개월 이상'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완화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4항제2호 중 "1개월 이상"을 "6개월 이상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) 제19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	제19조(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
등) ① ~ ③ (생 략)	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	4
단체의 장은 가족친화지원센터	
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
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	
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	
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	
취소하여야 한다.	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	2
사유 없이 <u>1개월 이상</u> 수행하	<u>6개월 이상</u>
지 아니한 경우	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